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7. 8.(월) / 총 4매(본문2)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신광호, 사무관 이승춘, 주무관 박재현</li> <li>• ☎ (044) 201-3671, 3672</li> </ul>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7. 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경북 영천,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

**-군사시설 해제지역을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**

**-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비 232억 원 지원, 세제감면·규제완화 등 혜택**

□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북 영천시 남부동 일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'미래형 첨단복합도시'로 조성될 전망이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'미래형첨단복합도시'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.

□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합작으로 1,893억 원을 투자하여 591,000㎡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,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.

○ 또한, 이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·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·연구시설,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게 된다.

○ 한편, 영천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탄약창, 3사관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이 낙후되었으나,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영천시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민간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, 주변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《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위치도 및 조감도 》



-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32억 원을 지원하고, 각종 세제·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.

※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혜택,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, '15년부터 총 16개 지역을 선정 (16개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은 6개, 이번 영천 지구가 7번째)

-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신광호 과장은 “영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경제 활력소가 되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”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승춘 사무관(☎ 044-201-36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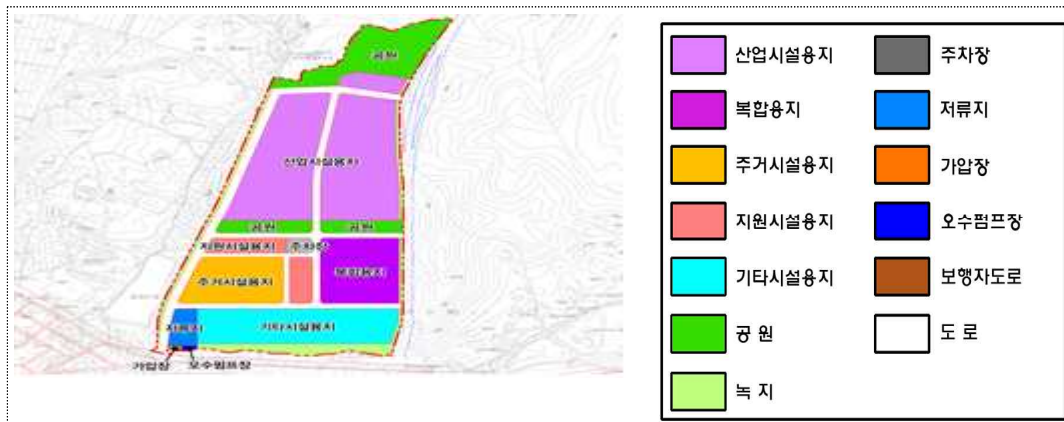
□ 지정목적 및 필요성

-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광역교통 요충지역에 항공·군수, IT,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성장거점으로 육성
  - \* (주요시설) 산업시설(항공·군수, 첨단IT 등), 교육·연구 업무시설, 주거시설 등

□ 주요 사업 내용

- (사업 방식)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군수, 항공 등 업종유치, 배후주거지 등 첨단복합도시 건설
- (사업비 구성) 총사업비 1,893억원(민간자본 1,160억원과 재정지원 733억원) 조달
  - 민간자본(1,159.9억원)은 SPC(영천 20%+민간 80%) 자체자금을 바탕으로 PF자금 및 분양수익으로 재정조달
  - 재정지원(733억원)은 국비(232억원\*)와 지방비(501억원)로 조달
    - \* 국토부 도로사업 지원(100억원), 환경부 등 하수처리시설 지원(132억원)
- (추진경과) 투자선도지구 선정(15.7) →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17.12) →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(19.1) → 국토정책위심의(19.6)
- (토지 이용계획) 산업시설(187천㎡, 31.7%), 공공시설(163천㎡, 27.7%), 주거시설(53.9천㎡, 9.1%), 복합 및 지원시설 등 기타(186천㎡, 31.5%)

**< 투자선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>**



**1. 목 적**

-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,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

\*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‘15.1.1)과 함께 제도 도입

**2. 적용대상 및 유형**

- (적용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 사업\*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

\*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 개발사업 등

- (유 형) 낙후지역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

- 이와 함께 주요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‘KTX지역경제거점형’(‘16~‘17년), ‘혁신도시 연계형’(‘18년) 등 별도의 유형 설정

\* ‘18년부터 KTX형은 일반형 사업으로 신청 가능

**3. 주요 혜택**

- 유형(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)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 특례, 재정지원\*, 세제·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

\* 재정지원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(낙후도가 심한 70개 시·군, 행안부·국토부 공동고시)에 한해 사업 당 100억원 이내 지원

구 분	발전촉진형(낙후지역)		거점육성형(낙후지역외)
	성장촉진지역	접경·도서지역	
유형별	사업당 100억원	-	-
	세제·부담금 감면		-
공 통	규제 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종)		
	자금지원(지자체), 인허가지원 등		